

광주기상청 오보, 초유의 물난리 초래했다

100mm→250mm 오락가락 예보 속 이틀간 최대 512mm 퍼붓어 예보 믿고 수위 조절했다 뒤늦게 방류량 늘려 구레 피해 키워 영산강홍수통제소-기상청 책임 떠넘기기도... 시민 불만 커져

광주지방기상청의 '오보'로 홍수통제소가 물 방류량 조절에 실패하면서 최악의 광주-전남 물난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상청 예보 시스템이 기후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기상청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기상청 날씨 예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해외 기상청 사이트에서 국내 날씨를 확인하는 이른바 '기상명령'까지 생겨날 정도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기상청은 지난 7일 새벽 5시께 '8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날씨 전망 자료를 냈다. '오보'였다. 이날 새벽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에는 무려 177.2mm의 비가 쏟아졌다.

광주기상청은 이날 오후 2차 전망자료를 냈다. 이번에는 '8일까지 평균 100~150mm, 많은 곳에는 250mm가 내리겠다'는 내용이었다. 또 빗나갔다. 7일 하룻 동안 광주에만 260.6mm가 내렸다. 8일에는 255.5mm가 쏟아졌다. 7~8일 이틀간 최대 512.1mm의 비가 내린 것이다.

'호우주의보' 발령 시기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기상청은 지난 7일 새벽 4시 광주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하지만 이날 새벽 6시까지 짙게 내렸다. 내린 비의 양은 고작 1.6mm. 기상청은 호우주의보를 해제했다. 다시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시간당 29.2mm의 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중인 11시 40분께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예보를 해야 할 기상청이 중계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최악의 물난리가 난 구례읍 일대 서서천 붕괴·범람도 기상청의 오보가 역할을 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가 폭우가 내리던 시간대 방류량을 늘리는 등 물 관리에 실패한 원인을 기상청 탓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영산강홍수통제소 측은 "최대 200mm라는 기상청 예보를 토대로 수위를 조절했다가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방류량을 늘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상청 '오보'만 믿고있다가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상류에 자리잡은 섬진강댐을 큰 폭으로 개방하면서 피해를 키웠다. 게 구례지역 주민들 주장이다.

홍수통제소는 지난 1일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섬진강댐에서 초당 50~600t을 방류했다. 7일에만 295.5mm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오전 8시, 초당 200t 가량의 방류량을 유지했다. 8일 오전 8시까지 133mm의 집중호우가 내리자 오전 8시부터 초당 1000t으로 늘렸고 지난 오전 9시에는 초당 1800t 이상의 물을 쏟아냈다.

200mm가 넘는 집중호우에도, 방류량을 늘리는 등 수위를 조절하지 않다가 갑자기 방류량을 늘리면서 구례읍 등 구례군 지역 침수로 이어졌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환경부도 기상청의 '오보'를 부각시켰다. 기상청이 지난 7~8일 '전북 100~200mm 많은 곳 300mm 이상'이라고 예보했지만 정작 유역평균 강수량 341mm, 최대 411mm를 기록했다. 게다가

하지만 영산강홍수통제소는 환경부 소속, 기상청은 환경부 외청이라는 점에서 두 기관의 떠넘기기 행태에 대한 시선도 좁지 않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7일 새벽 5시 예보 당시 전북과 충청지방에 300mm 이상의 비를 예보하고 광주-전남지방에는 150mm 이상 예보 했으나 강수 집중구역이 약 100km 남쪽으로 형성되면서 광주-전남 북부지역에 국지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교량에 걸린 쓰레기 제거

12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주택가 인근 철교 하부교량에서 복구건 설과 직원들이 지난 폭우 때 교량에 걸린 쓰레기들을 제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 또 늑장수사 논란

사기사건 4개월째 피고소인 조사조차 안 이뤄져 수사 미뤄지는 사이 또 다른 사기 행각까지 발생

광주서부경찰의 수사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0대 여성 사채업자의 사기극, 21대 총선 선거 사건 수사 장기화로 인한 수사 의지를 의심 (광주일보 8월 6일 6면) 받는 상황에서, 수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고소사건까지 거론되고 있어서다.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다 되도록 피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이 같이 수사가 미뤄지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측을 상대로 추가 사기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B씨 등 부동산업체인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68억원 상당의 토지를 B씨 등 부동산업체에 매각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가격 중 33억원을 받고 소유권을 업체로 넘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뒤로부터 약속한 기간(20일) 내에 잔금(35억)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B씨측 부동산업체의 대표이사직과 주식을 넘겨받기로 약속했다.

A씨는 그러나 약속한 기한에 대금을 받지 못했고 B씨측에 약속서 이행을 요구, 뒤늦게 회사를 넘겨받아 경영상태를 파악하던 중 3억여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지난 4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제는 경찰의 B씨 등에 대한 조사가 미뤄지면서다. B씨의 경우 이미 해당 부동산업체 대표이사가 아닌데도, 경찰 조사를 미루고 업체 임원인 것처럼 회사 서류를 위조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지난 7월, B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A씨는 "횡령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인데도, 제대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니 황개치고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서부경찰은 이와 관련, "출석요구를 수차례 했지만 '열이나는 등 몸도 좋지않고 코로나도 유행인데 나중에 받겠다',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나오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소인 3명의 조사는 끝난 상태로, B씨가 이번 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겠다고 한 상태"라며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목포 부동산' 손해원 징역 1년6개월

방어권 보장 차원 법정구속은 면해

손해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 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의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착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인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A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과 관련,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매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이들이 실권리자이며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국토부 발표 이후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손 전 의원에 대해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상담 운영자 B(62)씨에 대해서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대석 서구청장 직위상실형 선고

금품수수 징역 6개월·집유 2년 광주지법 판결...서 청장 항소 방침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 구청장은 광주환경공단에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변 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이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서 구청장은 청장직을 잃게 된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하수처리장지 설명회와 실형을 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함께 기소된 A씨를 통해 하수처리업체 대표에게 800만원을 받고 승진 청탁 대가로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 후보 선거캠프 수행원이던 A씨는 서 구청장과 같은 후보의 선거운동

을 했었고 사업·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850만원)를 갖고 나머지를 서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0만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서 구청장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공직적 차원에서 협조해 준 점에 대한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고문료로 생각하고 대가성 없이 수수했다'는 서 구청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구청장이 해당 하수처리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명함을 만들거나 위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고문료도 채용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고문료로 일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승진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공무원이 자신을 통해 승진에 도움을 받고자 200만원을 준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취득한 이익 중 10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반영했다. 서 구청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